

25.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금지 사건

<헌재 2001. 12. 20. 2001헌가6, 2001헌가7(병합)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제청, 판례집 13-2, 804>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유사휘발유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규정한 석유사업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사건이다.

신청인들은 2000.경부터 수개월간 창고 및 저장용 대형 원통형 탱크 등을 설치해 놓고 솔벤트와 톨루엔 용제를 각 5:5 혹은 6:4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휘발유를 생산하여 전국 각지의 판매처에 1통당 8,500원-9,500원씩 합계 2,500만원-6억 5천만원 가량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위 사건의 심리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 판매목적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석유사업법 관련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휘발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82. 12. 31.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예외 없이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행위만이 처벌되었을 뿐 유사휘발유 이외에 도료용 용제나 희석제 등이 우연히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문제된 적은 없었으며, 직접적인 규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옴으로써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석유에서 화학적 공정과정을 거쳐 추출되는 제품” 내지 “석유에 일정한 화학 반응이 가해져 만들어진 제품”으로, ‘유사석유제품’은 비록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통상 “석유제품에 유사한 것”, 따라서 “정품이 아닌 가짜 석유제품”으로 넉넉히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경위나 입법취지 및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온 법운용의 실태를 아울러 본다면, 가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해석상 금지행위의 대상이 다소 광범위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적용범위의 광범성은 이미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대상으로서의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곧 바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 목적의 정당성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형사벌을 채택한 입법자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 용도로 유통시킬 의사로 생산을 한 경우와 그 연료로 판매한 경우에 한정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며, 그 위반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김영일, 권성, 김효중, 송인준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임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나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유사석유제품은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등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어 오히려 대통령령에서 유사석유제품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그 제조 등을 금지하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는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넘어서 직업수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위험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처벌법규가 수권법률에서 요구되는 위임의 구체성 결여 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 것이라면, 오랫동안 시행되어 고착된 한정적 법 해석·적용 운용상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처벌법규가 위헌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